

August 14, 2014

국정감사제도 주요 변경내용

국회는 2014. 1. 23. 매년 정기국회 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분리하여 연 2회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정감사의 연 2회 실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상시 국정감사’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국회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기업들도 이제는 국정감사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절하게 협조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성숙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업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올해 변경된 사항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 제도 개관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실시되기 보다는 국민적 비리·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조사가 헌법상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출석과 서류제출요구 등 국정감사·조사의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지는바,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자 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회는 국정감사를 분리하여 실시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국회는 위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1차 국정감사는 2014. 8. 26. ~ 9. 4.(10일간), 2차 국정감사는 2014. 10. 1. ~ 10. 10.(10일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본회의 의결 없이 임시회 또는 정기회 기간 중 30일 범위 안에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감사대상기관, 증인, 감사일정 등이 국정감사에 임박하여 정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시작일 직전에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②·③ (생 략)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감사시작일 직전에 집회되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3. 최근 국정감사·조사의 경향 및 시사점

최근 국정감사·조사에서의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업인 및 민간단체 대표는 2011년 61명, 2012년 145명, 2013년에는 196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인 증인채택 경향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경제 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국회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2014. 8. 13. 또는 14.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채택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국정감사는 2014. 10. 1.부터 개최될 예정이므로 2차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채택 안건은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당사자는 국회의원 및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의 취지와 절차, 국회의원 또는 정부부처의 동향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성숙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강신섭 대표변호사	TEL. 02 316 4046	E-Mail. ssbkang@shinkim.com
● 송웅순 대표변호사	TEL. 02 316 4001	E-Mail. wssong@shinkim.com
● 조영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36	E-Mail. yhjo@shinkim.com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630	E-Mail. dybaek@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